

2024년도 제42회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에 따라, 2024년도 제42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자격시험 명칭 변경(2024. 05. 17.부터 적용)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일인 2024. 05. 17.부터 자격시험 및 자격증 명칭을 문화재수리기술자에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변경 예정

○ 출제범위 변경(2025년도 제43회 시험부터 적용)

- 2024년도 제42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문제 출제*

*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규정 등을 기준으로 시험문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2025년도 제43회 자격시험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문제 출제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원서접수기간	시행지역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필기 시험	2024. 02. 23.(금) 09:00:00 ~ 23:59:59, 02. 26.(월) 00:00 ~ 02. 29.(목) 18:00 ※ 참고: 02. 24.(토), 02. 25.(일) 제외	서울,부산, 대구,광주, 대전	2024. 03. 23.(토)	2024. 05. 08.(수)
면접 시험	2024. 06. 24.(월) 09:00 ~ 06. 28.(금) 18:00 ※ 면접시간 선착순 선택	서울	2024. 07. 20.(토)	2024. 08. 07.(수)
응시자격 및 면제서류 제출기간		2024. 02. 23.(금) 09:00 ~ 18:00, 2024. 02. 26.(월) 09:00 ~ 02. 29.(목) 17:00		

< 면접시험 원서접수 안내 >

- 수험자는 면접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시 원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종류 및 면접 시험시간을 직접 선택하여 접수(응시수수료 20,000원)하시기 바랍니다.
- 선호하는 면접 시간대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바랍니다.

- ※ 필기시험 합격자(전(前) 회차 필기시험 합격자 포함), 필기시험 면제자도 면접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반드시 접수해야 함
-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 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 정기접수 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 ※ 증빙서류 제출·심사 후에 시험의 일부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

○ 필기시험

- 일반응시자(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종 류	과 목		전 공 과 목(3과목)		
	공통과목(1과목)	객 관 식	객 관 식	주 관 식	
보 수 기 술 자	① 문화재관련법령	② 한국건축사	③ 한국건축보수실무	④ 한국건축구조	
단 청 기 술 자			③ 단청보수실무	④ 단청개론	
실축설계기술자			③ 한국건축설계제도실무	④ 한국건축실축	
조 경 기 술 자			② 조경사	③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④ 전통조경
보존과학기술자			② 화 학	③ 문화재보존실무	④ 보존과학개론
식물보호기술자			② 토양학	③ 식물보호실무	④ 수목생리

- ※ 시험과목(4과목): 공통과목 1과목, 전공과목 3과목(객관식 1과목 + 주관식 2과목)
- ※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규정 등을 기준으로 시험문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문화재 관련 법령” 과목 시험범위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 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면제과목(2018. 5. 28. 이전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문화재 수리 경력 공무원)

종 류	공 통 과 목	전 공 과 목
보 수 기 술 자	① 문화재 관련법령	④ 한국건축구조
실 측 설 계 기 술 자		④ 한국건축실측
조 경 기 술 자		④ 전통조경
보 존 과 학 기 술 자		④ 보존과학개론
식 물 보 호 기 술 자		④ 수목생리

※ 단청기술자는 필기시험 과목면제 없음

○ 면접시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함

● 해당 기술 종류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 올바른 직업윤리관

나. 시험시간

○ 필기시험

교 시	과 목	시 험 시 간		
		입실시간	일 반 응 시 자	과 목 면 제 자
1	①, ② 과목	09:00	09:30 ~ 10:25 (55분)	09:30 ~ 10:00 (30분)
2	③ 과목	10:45	10:55 ~ 12:55 (120분)	10:55 ~ 12:55 (120분)
3	④ 과목	13:55	14:15 ~ 16:15 (120분)	-

※ 필기시험 3교시 시험시간 1/2 경과 시 중도 퇴실 가능

○ 면접시험: 1인당 15분 내외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및 주관식(논술형)

- ※ 시험문제 공개(주관식 논술형 과목은 시험문제는 공개하나 채점 기준은 비공개)
- ※ 논술형 시험 답안 정정 시에는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며,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 ※ 답안 작성 시 삼각자, 곡자 등 모든 종류의 제도기는 일절 사용할 수 없음(도면, 그림 등의 작도[作圖]는 프리핸드(수작업)실시)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 단청시험은 실기작도(2시간) 병행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제2,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1.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2.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정, 보존과학, 식물보호)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가진 자이어야 함
 - 1)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문화재수리기능자

- ※ 응시자격 심사기준은 필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024. 02. 29.)

나. 결격사유(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 ※ 결격사유 기준은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2024. 08. 07.)

6. 필기시험 면제

가. 전부면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 2023년도 제41회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자 【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함】
- ※ 근거: 구. 「문화재보호법」(2007.4.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 (법제처 법령해석)

수리기술자 종류	면제대상자	면제범위
보수 또는 실측설계	전통건축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필기시험 전부면제
조경 또는 식물보호	전통조경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
보존과학	보존과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

나. 일부면제

- (2018. 5. 28. 이전)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
- ※ 근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단서 조항 삭제(법률 제15066호로 개정된 것, 동법 부칙 제2조)
- ※ 경력산정 기준일: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4. 02. 29.)

7.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일부)면제자 제출서류

가. 응시자격 서류 제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 응시자

-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3 「건축법」에 따른“건축사”자격증 사본 1매(원본 제시)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응시자

1) “문화재수리 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3 경력증명서(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2호 서식) 원본 1매
※ 경력(재직)증명서는 재직기간, 담당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4 아래의 4대보험 가입확인서 중 1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사전 동의 시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을 통하여 공단에서 조회 가능

- 5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주 경우)
- 6 일용근로내역신고서(일용근로자 경우)

◆ 경력증명 시 관련 “문화재수리 분야” 경력 적용 범위

-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재직경력 및 문화재수리업자가 수행하는 수리현장의 참여 경력
- 경미한 문화재 수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를 행하는 사회적 기업 등 법인이 행하는 수리 현장의 참여 경력
※ 상기 경력은 「문화재수리업 등」으로 시·도지사에 등록된 회사의 근무 경력임
-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해당분야 실무 경력
※ 상기 경력은 문화재 전담부서 및 문화재수리업무에 상시 근무 경력임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2024. 02. 29.)

2) “중학교 졸업자 또는 그 수준이상” 학력소지자

-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3 졸업증명서(중학교 이상) 원본 1매

3)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제출서류” 없음(공단 자체 전산조회로 갈음)

4)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소지자

-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③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1매(원본 제시)

나.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별 제출서류

○ 2023년도 제41회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없음

※ 전년도 필기합격자가 당해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더라도 면접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자 [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함]

-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③ “성적증명서” 원본 1매(입학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 필기시험 일부 과목면제자

-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③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매

※ 경력의 인정범위: 문화재전담부서 및 문화재수리업무에 상시근무만 인정
(단, 비전담부서(건축과 등)에서 문화재공사 감독관 등으로 임명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해당 기간만 인정)

※ 상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경력증명서 양식 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 해당회차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라. 제출기간

응시자격 및 면제서류 제출기간

2024. 02. 23.(금) 09:00 ~ 18:00,
2024. 02. 26.(월) 09:00 ~ 02. 29.(목) 17:00

마.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 시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봉투에 “문화재수리기술자 면제서류 재증”을 표기

바. 서류제출 기관

기관명	구분	주소	우편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1·2차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전문자격시험부	02-2137-0566
부산지역본부	1차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필기시험부	051-330-1812
대구지역본부	1차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필기시험부	053-580-2372
광주지역본부	1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61008	필기시험부	062-970-1761
대전지역본부	1차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1	35000	필기시험부	042-580-9136

※ 조직 개편 등에 따라 기관(부서) 명칭 또는 담당자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8.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2)
- 면접시험: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9.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구분	원서접수기간
필기 시험	2024. 02. 23.(금) 09:00:00 ~ 23:59:59, 02. 26.(월) 00:00 ~ 02. 29.(목) 18:00 ※ 참고: 02. 24.(토), 02. 25.(일) 제외
면접 시험	2024. 06. 24.(월) 09:00 ~ 06. 28.(금) 18:00 ※ 면접시간 선착순 선택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접수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응시희망자, 시험(과목) 면제대상자는 응시자격 서류, 면제서류를 먼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승인 심사를 받은 후에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응시 불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정보는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취득한 자격의 '등급', '인증번호', '합격연월일'을 직접 입력(2020. 1. 1. 이후 실시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한함)

- ※ 취득정보 진위여부 조회 시 유효하지 않은 성적인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리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정보의 오입력 등으로 성적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 Q-Net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인터넷 원서접수 절차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 로그인 ⇒ 원서접수 클릭 ⇒ 문화재수리기술자 클릭 ⇒ 응시종목 선택(6개 자격 중 1개만 선택 가능)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정보 입력 ⇒ 시행지역 선택 ⇒ 시험장 선택 ⇒ 응시 수수료 결제 ⇒ 수험표 출력

- 큐넷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90X120 이상, 300DPI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단, 기존 큐넷 회원일 경우 바로 원서접수 가능)

- ※ 상기 사진파일은 최종합격자 자격증 발급용으로 활용됨

- 수수료를 납부(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됨

-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수험자의 접수편의를 위해 공단 지부·지사에 원서접수 도우미 운영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필기) 30,000원, (면접) 20,000원

-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 가상계좌는 접수 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 완료해야 함(지정 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 취소됨)

- ※ 접수 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라. 응시수수료 환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 환불방법

- 수수료 환불은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 ⇨ “마이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접수 취소 및 환불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원할 시에는 큐넷 메인 홈페이지 자료실 ⇨ 각종 서식에서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구분	환 불 기 준
100%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60% 환불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	·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 시험 결시자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2.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 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3.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첨부)
4.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5. 예견할 수 없는 기후 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재난문자,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같은 시험 일자에 2개 이상의 자격으로 접수되어 한 자격을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시험일시를 사전에 고지한 경우는 제외)
- 수험원서를 접수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이외의 다른 광역지방 자치단체 행정구역으로 시험장이 배정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시험장소를 사전에 고지하여 수험자가 선택한 경우는 제외)
- 시험 시설 장비의 고장, 정전, 단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으로 시행을 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시험 관련 고지 오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착오에 대한 정정 공지를 하였을 경우는 제외)

마. 시험시행기관

기관명	구분	주소	우편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1·2차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전문자격시험부	02-2137-0566
부산지역본부	1차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필기시험부	051-330-1812
대구지역본부	1차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필기시험부	053-580-2372
광주지역본부	1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61008	필기시험부	062-970-1761
대전지역본부	1차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1	35000	필기시험부	042-580-9136

※ 조직 개편 등에 따라 기관(부서) 명칭 또는 담당자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 「SMART Q-Finder」 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사.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아.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 또는 응시편의제공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 증빙서류 미제출시,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사항은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자.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

참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628호) 등에 따라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표현함.

장애 유형	편의 구분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서류	
시각 장애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시험시간 1.5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 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문제지대독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 상기 항목 중 택1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문제인지 방법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해당 없음	
답안작성 방법		- 확대 답안지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뇌병변 장애	장애 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해당 없음	
지체 장애	(1) 상지 중증 (장애정도가 심 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2) 상지 경증 (장애정도가 심 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3) 하지 (장애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 포함)	시험시간	- 일반 수험자와 동일	- 시험시간 1.1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해당 없음		

장애유형		편의구분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서류
지체장애	(4) 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1) 또는 (2)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 (3)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 작성방법 및 기타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해당 없음	
청각장애	장애 정도 구분 없음	기타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 시험실 배정		①,②,③호 중 하나
기타 의료 기관장 이 인정한 장애	일시적 신체 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편의제공 사항 전반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④호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등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임신부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④호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검정시험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예: 음성지원컴퓨터 신청 → 점자 문제지 제공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제출서류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제출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 ④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기입 필요, 소견서 불인정)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복합장애인 중 손 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지체장애 중증 상지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분*0.1)=6분] = 84분

10. 필기시험[1교시]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의견제시: 2024. 03. 23.(토) 17:00 ~ 03. 29.(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큐넷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객관식(1교시)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같음

11.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1) 발표일시

○ 필기시험: 2024. 05. 08.(수) 09:00

○ 면접시험: 2024. 08. 07.(수) 09:00

2) 발표방법

○ 큐넷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60일간】

○ ARS(1666-0100): 【4일간, 유료】

나. 합격확인서 및 자격증 발급

1) 합격확인서 발급

○ 신청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방법: 큐넷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발급
(www.Q-Net.or.kr/site/surigisul)

2) 자격증 발급

○ 교부개시일: 문화재청 별도 교부일정에 따름

※ 결격사유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조회·회신 처리기간 필요

○ 교부기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72)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 교부방법: 자동 발급

- (자동발급)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합격자 응시원서정보(주소, 연락처, 사진 등)로 문화재청에서 자격증을 발급하여 우편으로 발송

※ 합격자 발표 후 신청을 받아(3일간) 자격증 수령 주소 정보를 문화재청에 전달

※ 자세한 사항은 큐넷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공지사항에 안내

12. 수험자 유의사항

【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포,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인정범위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PASS앱을 통한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부서관·군무원 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 및 정부24 재학증명서(사진(컬러)·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0점)처리

※ 단, 필기시험 3교시 시험시간 1/2 경과 시 중도 퇴실 가능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고,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지워지는 사인펜은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4.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큐넷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제1차 시험(필기)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

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6. 2·3교시 주관식(논술형)시험 답안작성은 검은색 필기구 한가지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2가지 이상 혼합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0점 처리됩니다.

7. 주관식(논술형) 답안지의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란 이외의 부분(답안 표지, 연습지, 여백, 답안작성부분 등)에 답안과 관련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여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합니다.

8. 주관식(논술형)시험 답안정정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답안지가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객관식(1교시)답안카드 및 논술형(2,3교시) 표준답안지 건본은 큐넷 문화재 수리기술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고 수정테이프는 사용가능하나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삼각자, 곡자 등 모든 자 종류의 제도기는 일절 사용할 수 없음

【 제2차 시험(면접) 수험자 유의사항 】

1. 면접시험의 시험시간 및 기술자 종류는 면접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2. 수험자는 신분증, 준비물을 지참하여 시험일 입실 시간까지 수험자 대기실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마이페이지>원서접수내역에서 수험표 출력 가능

3. 응시자의 표식 등이 될 수 있는 소속회사 근무복 등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 (☎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수험자 본인의 동의를 통하여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수집·이용 및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국적, 연락처, 주소, 전자메일주소 학력 사항, 경력 사항, 자격취득사항 본인이 응시·면제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기타 입증자료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각종 제출서류) 	공단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업무처리 (응시·면제 자격 서류심사 등)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시험 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 응시 또는 면제를 위한 서류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문화재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사편찬위원회 등 국가자격시험 시행 근거 법률에서 정한 기관 및 응시·면제 자격 심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국적, 연락처, 주소, 전자메일주소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 취득사항 본인이 응시·면제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기타 입증자료(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각종 제출서류) 	공단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업무처리 (응시·면제 자격 서류심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청: 국가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준영구) 국사편찬위원회: 각 기관이 정한 문서 보존기간 동안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 응시 또는 면제를 위한 서류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내역 고지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의 시행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 합격자관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청: 국가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준영구) 국사편찬위원회: 각 기관이 정한 문서 보존기간 동안

※ 수집 근거: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4.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경력심사대상 자격만 해당,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조회 항목	조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의 업무처리(응시·면제자격 서류심사 등)

※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에 동의하십니까? (택일)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동의 미동의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 점선 이하는 공단직원이 작성하는 곳으로 수험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조회정보	국민연금가입증명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자격득실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피보험자격 <input type="checkbox"/>	확인일자	직원성명	(인)
------	-----------------------------------	-----------------------------------	------------------------------------	------	------	-----

경력(재직)증명서 작성 방법

- ① **성명**: 한글로 작성하되 정자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②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③ **전화번호**: 자택 및 회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 ④ **주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작성하되 통·반까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⑤ **재직기간**: 기간을 연·월 단위로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⑥ **소속 및 직위**: 소속은 해당 기관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⑦ **담당 업무 내용**: 해당 기술 분야(보수,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단청 분야)의 실무경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⑧ 각종 증명 발급은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 및 발급하여야 하며, 문화재 수리 업무 분야에 종사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업무에 종사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서식 4】 사실확인서

사 실 확 인 서

※ 본 사실확인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에 필요한 경력사실이며, 아래의
 증명이 허위, 위조 등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사문서위조, 변조 등)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아래의 경력 사실을 입증합니다.

(입증인) 성명 : (인)

입증인 인적사항

입증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수험자와의 관계		
주소			
근무처	직위	근무처 전화번호	

첨부 : 입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부.

- ※ 입증인 : 객관적으로 수험자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동일 사업장 또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자 등)
- ※ 위 사실확인서의 진위확인과정에서 자료보완 등을 위해 추가서류(입증인의 인감증명서, 공증확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불가·허위작성 등이 발견되면 반려되거나 관련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될 수 있음

(입증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근무처, 직위, 근무처 전화번호, 수험자와의 관계	수험자 응시자격 또는 일부면제의 증명 진위여부 확인	<u>수집일로부터</u> 5년간

※ 입증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험자의 경력사항이 입증되지 않아 응시자격서류 심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국가전문자격 응시자격 또는 일부면제를 위한 경력 사실

수험자 성명		생년월일	
근무직장명	직위	재직기간	담당업무내용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